

- ▶ 2011. 6. 28(화) 배포
- ▶ 총 28쪽 (참고자료 포함)

❖ 기획재정담당관 박종필
서기관 김범석
☎ 02-2110-711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행정, 7.1부터 이렇게 바뀐다 -

“7.1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등 시행”

- 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 '97.3.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루어 오다가 14년 만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 복수노조제도 도입으로 산업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지금까지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사업주도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복수의 노조가 경영활동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노조들간 다른 의견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다.
-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단체교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교섭대표가 없어 사용자가 교섭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간 자율 → 과반수 노동조합 →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섭대표가 정해진다.

- 이와 관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어 온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는 금지된다”는 행정해석을 폐지하고,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유일단체교섭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당연 무효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재확인·강조하였다.

□ '04.7.1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40시간제가 올 7.1 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 이로써 34만개 사업장, 287만명 근로자가 새롭게 주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6시간 연장근로 가능 등 근로시간·휴가 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 연장근로 할증율도 최초 4시간까지는 25%로 하향(4시간 이후는 50%)

- 다만, 주40시간제 하에서도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주6일·주5일·주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 7.1부터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www.work.go.kr)에서 같이 볼 수 있게 된다.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털 대표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및 수도권 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의 일자리 정보가 연계되어 검색이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워크넷에서 볼 수 있는 일평균 구인정보가 10만건, 24만명에서 20만건, 50만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1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는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 빈곤」 문제를 풀고, 서민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 새로 시행 또는 추진예정인 주요 대책들도 발표하였다.

- 7.5 고용노동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노동부의 비전 등 새로운 가치체계도 마련하였다. 비전은 일자리를 국정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로 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미션과 4대 핵심가치(열정과 긍지, 공정과 청렴)도 전 직원들과 공유하여 앞으로의 도약의 계기로 삼기로 하였다.

<별첨 1> 2011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별첨 2> 복수노조제도 주요 내용 및 정책방향

<별첨 3>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시행 관련 제도변경 내용

<별첨 4> 국민에게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

<별첨 5> 워크넷-공공-민간취업포털 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고용노동부 관련]

2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1] 고용유인형 제도개편

- (재정·조달) 평가모델 개발, 전문연구기관 참여 확대 등 고용 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고용과 예산의 연계 강화

* 평가 전담기관 지정·운영,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점검 강화 등

[2] 분야별 일자리 창출 대책

- (청년·여성 고용)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시범도입('12년)을 위한 훈련 과정 평가기준 마련 등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
 -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일·가정 양립을 지속 추진하고, 경력단절·고학력·농촌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장애인 활동보조인 확대('10년 1.9만→'11년 3.2만)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지속
 - 사회적 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제도 신설(지역신보),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공공서비스 참여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단축(연 1회→2회), 자율경영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책임성·투명성도 함께 강화
- (재정일자리사업 효율화)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고(70%→80%), 중앙과 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을 내일배움카드제(실직자 대상)로 통합(7월)하여 취업·실직이 반복되더라도 연속성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기업 청년인턴 수혜인원 확대, 취업지원금 상향조정 등 청년인턴제 개선 추진

[3]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

- (노사관계 선진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선진 노사문화 정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현장 컨설팅, 노동위원회의 기능 보장* 등으로 복수노조 제도의 원활한 시행 지원
 - * 교섭창구단일화 이의신청 처리,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등
 -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
- (비정규직 등 근로개선) 사내하도급, 시간제 근로자 및 취약 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 사내하도급의 적정운영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사업주의 의무·노력사항 등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
 - * (원청 의무) 원청 귀책의 임금체불시 연대책임, 산재 위험장소 안전조치 등
 - (하청 의무) 사회보험 가입,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
 -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근로감독관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
 -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1.하)
 - * 임금과 근로조건의 시간비례 원칙,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 규정
 - 공공기관 인사·보수규정에 임금·휴일·복리후생 등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6~8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제한(주 12시간 이내)의 적용이 배제되는 운수업, 물품판매업 등 12개 업종

-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퀵서비스 · 택배기사 · 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12년) 추진
-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10~11월중, 1천개소)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인력 미스매치 해소)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맞춤형으로 인력양성
 - 폴리텍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 한국기술교육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도입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인력 양성 강화
 - * 정규학기 및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기업체에서 6개월 이상 현장실습 수행

3 부문간 격차 완화와 동반성장

(1) 일을 통한 복지

- (탈수급 유인 강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제도와 탈수급을 연계하여 시너지 제고
 - 취업 ·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제공되는 의료 · 교육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 * (현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한해 이행급여 지원 → (개선)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등도 지원
 - 탈수급자에 대해 주거지원, 고용촉진, 자산형성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적용을 확대
 - * 임대주택 입주권 유지, 탈수급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행복키움통장 적용,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
- (기초수급자 근로 촉진) 기초 수급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관리를 내실화
 -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우선 연계**
 - * (현행) 주3일 이상 근로자는 자활사업 면제 → (개선) 근로자의 소득신고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자활사업 회피 방지
 - **수급자 여건 · 특성, 직업능력 평가 등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여부 평가

[2] 복지 사각지대 축소 및 취약계층 지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유인 제고를 위해 사각지대 축소 노력 지속
 - 연구용역·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합리적 방안 마련

4 내수기반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1] 내수기반 강화

- (서비스산업 선진화) 각 분야의 규제완화 실적을 종합 점검하여 성과 미진과제에 대한 재추진 전략 마련 등 추진동력 제고
 - 전문자격 분야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창출·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
 -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보건·관광·교통 분야 등의 진입규제 개선, 네일·메이크업 등 뷰티서비스 자격 정비 등
 - 사회서비스업(돌봄, 아동발달지원 등), 복합 고용서비스 기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서비스산업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내수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사업 기회를 확충하여 성장지체 부문의 소득창출 기반 조성
 - 교통불편에 따른 인력채용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삶의 방식 전환) 국내 소비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휴가 및 기업 마케팅 행태를 개선
 - 주40시간 근무제(7월), 주5일제 수업(2학기 시범사업) 등을 고려하여 여가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강구

5 성장잠재력 확충과 미래 대비

(1) 성장잠재력 확충

- ☐ (인적자원 개발) 대학경쟁력 제고,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부응
 -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인적자원 투자 및 생산성 향상 유도

(2) 미래위험 대비

- ☐ (인구변화 대응) 고령인구의 취업기회 확대, 건강관리·자산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00세 시대 대응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추진

2011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2011. 7. 1.

【 순 서 】

I. 그간의 평가1

II. 기본방향4

III. 중점 추진과제6

<붙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I. 그간의 평가

1. 성 과

- '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빠른 고용회복」, 「법치」와 「자치」에 입각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했던 취업자수가 '10년 이후 민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 '11.1~5월 평균 401천명 등 17개월 연속 증가
 - * 취업자 증감(천명): ('08) 145 → ('09) △72 → ('10) 323 → ('11.1~5) 401
 - * OECD 사회정책보고서('11.6월): “한국의 노동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
- 고용률·실업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또는 상회
 - * 고용률(15세이상, %): ('08.5) 60.5 → ('09.5) 59.3 → ('10.5) 60.0 → ('11.5) 60.1
 - * 고용률(15~64세, %): ('08.5) 64.6 → ('09.5) 63.4 → ('10.5) 64.3 → ('11.5) 64.7
 - * 실업률(%): ('08.5) 3.0 → ('09.5) 3.8 → ('10.5) 3.2 → ('11.5) 3.2
 - * 주요국 실업률('11.4월, %): 일본, 4.9, 독일 6.0, 미국 8.7, 프랑스 9.2
- 취업애로계층의 규모와 청년실업률도 '09년부터 차츰 감소
 - * 취업애로계층(천명): ('08.5) 1,479 → ('09.5) 1,935 → ('10.5) 1,818 → ('11.5) 1,797
 - * 청년실업률(15~29세, %): ('08.5) 6.9 → ('09.5) 7.6 → ('10.5) 6.4 → ('11.5) 7.3
 - * 주요국 청년실업률('11.4월, %): 독일 7.6, 일본 9.5, 미국 16.5, 프랑스 19.4
-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예전에 비해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
 - * 노사분규(건 / 매년 6.22 기준): ('08) 30 → ('09) 39 → ('10) 26 → ('11) 16
 - * 근로자 천인당 파업손실일수(일): <한국> ('08) 49.9 → ('09) 38.1 → ('10) 30.2 / <OECD> ('06~'08 평균) 34.7
- '10.1월 노조법을 개정하여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현실을 조화한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제도를 도입
 - '11.5월말 기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률은 89.0%로 '10.7.1 시행 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정착 중(한도 준수율은 99.0%)
 - '11.7.1 시행되는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일반 국민의 지지 속에 산업현장에서는 차질없이 준비 중

□ '10.7.5 일자리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고용노동부가 출범하고, **일자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2020 국가고용전략(10.10월)」, 「청년 '내 일' 만들기 1,2차 프로젝트(10.10월 '11.5월)」, 「1,2차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10.6월 '11.6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10.7월)」 등 **범 정부적 일자리 대책 수립**
- 「중장기인력수급전망(10.5월)」, 「고용영향평가(10년~)」, 「지역 일자리공시제(11년~)」 등 **일자리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일을 통한 빈곤탈출 대책(10.12월)」,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10.12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10.12월)」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내일배움카드제 등)과 고용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등) 제도 개편**
- **산업재해율은 '98년 IMF 위기 이후 12년만에 0.6%대 진입('10년)**
 - * 산재율(%): ('98) 0.68 → ('03) 0.90 → ('04) 0.85 → ('05) 0.77 → ('10) 0.69

□ '11년에는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에 역점

- ①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②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③튼튼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④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등 4대 전략과제를 추진 중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청년취업아카데미·창조캠퍼스, 기초수급자 자녀 '내 일' 점프, 인터넷 실업인정, 범사회적 안심일터 운동 등 금년도 신규 사업을 착실히 실행
-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자리 현장 지원단(반)」 운영 중(4.11~)**
 - * 6.20 기준, 9,725개 사업장 방문, 총 1,476건 발굴(유사·공통사항 포함시 8,169건), 533건 개선
 - * 주요 애로사항: 공단지역 교통 불편 해소, 시간제일자리 규제 완화, 고용창출세제지원 확대 등

2. 앞으로의 과제

- 경제지표의 호조세와 고용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일자리 사정을 여전히 어렵게 보고 있음

< 국민들이 보는 일자리 사정(11.6.22~23, 성인 1천명 메트릭스) >

- 작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 사정은? 매우 나빠짐 5.8%, 나빠진 편 30.6%, 변함 없음 54.9%, 나아진 편 7.9%, 매우 나아졌음 0.8%
- 앞으로 일자리 사정은 어떻게 변화? 더 나빠질 것 39.8%, 변함 없음 37.3%, 더 좋아질 것 22.9%

- 우리 노동시장은 일하려 해도 일하기 어렵고(부족한 일자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근로빈곤)는 난제에 봉착

-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

* '09년 OECD 고용률 평균(15~64세)은 64.8%, 우리는 62.9%로 30개국 중 19위

- 소득분배 구조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은 OECD 30개국 중 26위

* 상대빈곤율(%): ('97) 10.6 → ('03) 11.6 → ('08) 15.0 → ('09) 15.2 → ('10) 14.9

- 노사관계 선진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노사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키우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미흡

- 국민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이며,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의 현장성을 주문

< 국민들의 기대사항(11.6.22~23, 성인 1천명 메트릭스) >

- 고용노동부가 어떤 업무를 최우선했으면? 일자리 창출 57.3%, 근로조건 향상 27.1%, 취약계층 권익보호 8.9%, 노사분규 예방 4.0%, 산업안전 2.5% 등
-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67.1%, 다른 부처와의 소통 미흡 12.7%, 공무원의 능력 12.1%, 노사관계 업무에 치중 8.1%

II. 기본방향

- ❖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근본적 해법은 '일자리'임
 - ❖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를 풀고, 서민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 시장과 노사관계 구현에 주력
-

1. 일자리 현장 애로사항 개선

- ①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 외에도 지역·업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규제, 미스매치 문제 등 해결
- ② 일자리 창출의 직접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더 능동적으로 발굴·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2. 인력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균형 추구

- ① 기업 인력수요의 유연성과 노동력 공급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조합 ⇒ 일자리의 양을 늘리면서 질도 동시에 제고
 - (수요)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일터 혁신'과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공정일터' 조성
 - (공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복지'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② 중소기업 친화적 일자리 정책과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간 정책조합 ⇒ 서민들을 위한 반듯한 일자리 창출

- (수 요) 근로자의 숙련을 높이는 HRD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시장임금을 보완하는 근로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공 급)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훈련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실무형 인재'로 키우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3. 일자리를 더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성숙

① 복수노조제도가 조기에 산업현장에 정착육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안착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행정력 집중

②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내 노사 자율해결 기조를 견지하고,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③ 대기업·정규직 노사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배려
하는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Ⅲ. 중점 추진과제

1. 일자리■ 더하는 노동시장

<1> 일자리 현장 애로사항 개선

□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6.30)

- 고용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자치단체 등과 협의, 애로사항을 조속 해결하고, 하반기에도 선제적 발굴·개선 노력

□ 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7월)

- * 유사·중복사업 추가 통폐합,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간 조정,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등

<2> 일터에서의 인력운영상 경직성 완화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시간제근로 선도기업* 발굴·지원, 정원·근로자 산정기준 변경**,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업종별 선도기업 12개사 발굴(서비스 4, 제조 4, 유통 2, 병원 2)

** 공공부문 정원('11.1월) 및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인원' 외에 '근로 시간'으로도 관리('11.하,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령 개정; 조특법 기 개정)

*** 근로시간 비례 보호, 취업규칙 작성, 초과근로 제한, 차별처우 금지,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시간제근로/통상근로 간 자발적 전환 등

□ 근로시간 줄이기

○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7.1 시행)

* 20인 미만 사업장에게 주40시간제 교육, 상담, 홍보 지원(수행기관: 중기협)

○ 스마트 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1월, 3월→1년) 등 근로기준법 개정(국회 계류 중)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위해 실태조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12월)

*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 12개(운수업, 통신업 등, 전체 근로자의 42.1%)

□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 근속·연령이 아닌, 직무와 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조직진단, 컨설팅 등 지원

<3> 공정일터 조성

□ 3대 고용질서 확립

○ (서면근로계약 정착) '12년 서면근로계약 교부의 법정 의무화에 대비, 영세사업장과 취약근로자 지도·홍보

○ (체불임금 최소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금융제재(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11.2월~, 민간조정관)

○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지킴이」,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권한 부여, 차별시정 신청 기간 연장(3월→6월) ('11.하, 기간제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대상별 보호대책

○ (사내하도급 근로자) 원·하도급 사업주가 준수할 가이드라인 제정(7월), 전자·IT·서비스·유통업종과 중소기업체 점검

< 가이드라인 공약위원(안) 주요내용 >

- ❖ 하청사업주: 근로조건 및 해고사유·시기의 서면 명시, 사회보험 가입, 적정임금 보장 등
- ❖ 원청사업주: 최저임금 이상 단가 보장, 부당한 단가인하를 강요치 않음, 원청의 교육훈련·복리후생시설 이용 등
- ❖ 원·하청 사업주 공동: 하청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원청은 간섭하지 아니함. 업체 교체시 고용 유지 및 신규채용시 사내하도급 근로자 우선 채용 등

○ (청소용역 근로자) 용역업체 교체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고용안정 지도, 실태점검(9~10월, 1천개소) 후 위법사항 조치

- * 도급업체에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의무 신설(6.2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도입(2.14~, 최고 3억원)

○ (건설 근로자) 월1회이상 정기 임금지급 준수, 적정임금 확보 방안 강구, 수행기관의 운영시스템 개선(6.24 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 (외국인 근로자) 중소도시에 외국인력지원센터 신설(30개, 3월~), 전담 상담센터 개소(7.1~, 안산) 등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

<4>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 영세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준비(6.24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간소화(3.2~; 인터넷 실업인정, 집체교육 등) 하면서 재취업 활동 촉진

□ 고용서비스

- 공공-민간 통합 일자리 정보망 구축*(7.1~), '일-교육·훈련-자격' 정보 연계 등 추진
 - * 민간취업포털(잡코리아·사람인·커리어)과 수도권 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에서 통합 제공 (향후 타 기관으로도 확대)
- 「고용센터 취업알선 내실화 방안」 마련(7월)
 - * 구인·구직자의 자율적 선택 지원, 구인·구직 DB 품질 제고, 워크넷의 사용자 중심 개편 등

□ 직업능력개발

- 현재 실업자 대상인 '내일배움카드제'를 비정규직, 이직 예정 재직자 등까지 확대(7월말)
-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4월~)
 - * 회계·세무, 쇼핑몰 운영, 서비스 마인드, 성공점포 노하우 등

□ 취업성공패키지

- 근로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10년 3만명 → '11년 5만명)하고, 취약계층 우선선정 및 지원 우대*

*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200→300만원), 자부담 면제(일반 20%) 등

□ 산재보험

- 퀵서비스기사, 택배업무종사자, 예술인, 간병인 등 특수형태 종사자 적용방안 마련(9월)
-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토록 하여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호 강화(6.24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 근로자공급사업자, 하역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화주 등으로 구성

<5>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 인적자본 확충

- 대기업 등 양질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성장동력, 부품, 뿌리산업 등에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훈련 지원

* 중소기업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규기관 선정
(7월말; 대기업형, 사업주단체형, 대학형)

- 폴리텍대에 전공심화과정 개설, 신성장동력 분야로 학과 개편, 주말·야간 훈련과정 개설 확대 준비(12년)

- 중소기업의 고급·신기술 분야 교육훈련 지원 강화(12년)

* 신성장동력분야의 중·장기 교육훈련에 대한 실비지원, 특히 중소기업이 대학을 활용하여 주문형 고급 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지원

□ 근로복지 향상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

□ 사회적기업 활성화

- (지속가능성 제고) 자금조달 경로 확충*, 공공시장 확대**, 창업·경영 지원 강화***

* 정책자금 지원, 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연계, 바우처 시장 진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 지방세 감면, 기업의 설립·출연 등 사회적기업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 청년벤처 발굴 등

- (사회적기업 확산)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중앙·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강화***

* 사회적기업의 날(7.1), 언론사와 연계한 「1사 1사회적기업 운동」 추진 등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인증 추천제 운영,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기업화 등

*** 금년부터 자치단체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및 예산집행 권한 이전

<6> 취업취약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

□ 청 년

- (일자리 늘리기) 창업·창직, 공공기관 증원, 안전·특허·생활 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청년 친화적 일자리 등 확대

- **(일꾼 키우기)** 산업계 주도 교육·훈련으로 일 잘하는 인재 양성
 - * <배움터→일터> 취업아카데미(53개 기업·사업주단체), 창조캠퍼스(10개) 등
 - * <일터→배움터> 기업대학(학위 및 비학위), 계약학과, QWL 밸리, 산업단지 캠퍼스 등
- **(미스매치 줄이기)** 고용서비스 인프라 개선(일-교육·훈련-자격 연계 등),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지방대생 취업 우대
- **(일자리 영토 키우기)** 해외 우량 구인처 개척(KOTRA 연계), '자치단체-대학' 협력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해외취업 활성화

□ 여 성

-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여성새일센터(90개소)」에서 전업주부 등 재취업서비스 확대, 사회적기업 등 여성적합직종 개발·확충
-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가족친화형 휴가·휴직*, 대·중소기업 연계 직장보육시설 확대
 - * 가족간호휴직제도(90일, 무급),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3일→5일), 출산 휴가 분할 사용 등('11.하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성차별 해소)**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 제고(컨설팅, 매뉴얼 보급 등),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 고령자

- **(제직단계) 고용연장 촉진* 및 임금피크제 도입요건 완화**** 등 더 오래 일하는 여건 조성
 - * 정년연장·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 우대('11.하, 시행령 개정)
 - ** 노사협의로 확대(현행 근로자 대표 동의, '11.하 법 개정), 중소기업은 임금 감액률을 10% 이상으로 하향(현재 20% 이상, '11.하 시행령 개정)

- **(실직단계)** 취업애로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인재은행(46개소)」, 퇴직전문인력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센터(6개소)」 역할 강화
- **(기반구축)** 「베이비붐세대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6.7)」 시행계획 마련,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11.하, 법안 국회제출)*
- *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비자발적 이직자 사업주 전직교육 강화 등

□ 장애인

-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 중앙부처 의무고용률(3%) 초과 달성,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민간부문의 고용 활성화)** 기업 맞춤형 양성훈련, ‘先배치·훈련 後채용 모델’ 확산,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명단공표 강화(연2회)
-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월795천원에서 최저임금액(월환산 903천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상향(7.1~)
- *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 마련

□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대상자 확대)** 근로능력 판정의 객관성 제고(사례조정회의 운영), 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상담사 운영 활성화(48명, 3월~)
- **(근로유인 강화)** 고용센터에 전담팀을 구성(2월~)하여 맞춤형 취업·훈련서비스 제공, 취업 시 교육·의료급여 지급 연장 등
- **(수급자 자녀 ‘내 일’ 점프)** <자치단체> 대상자 파악 → <고용센터> ‘진로상담-능력증진-취업알선’ 맞춤형 서비스

2. 일자리■ 더하는 노사관계

<1> 최근 노사관계 동향

□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 유지

- 6.27 현재 협약임금 진도율은 28.1%로 전년 동기(16.0%) 대비 12.1%p 빠르게 진행, 인상률은 5.2%로 전년 동기(4.4%) 보다 다소 상승
- 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입장 차이*, 현장 임·단협 교섭 본격화** 등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요인 상존

* 최저임금: <당초 요구> 노동계 25.2% 인상(5,410원), 경영계 동결(4,320원)
→ <수정안> 노동계 23.1% 인상(5,320원), 경영계 0.7%(4,350원) 인상

** 금속(산별교섭 보장, 사내하청 정규직화), 건설(건설기계 수급조절 연장, 임금·고용안정), 공공(임금인상, 성과연봉제 도입 등) 등이 쟁점

□ 7.1 복수노조제도 창구 단일화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갈등 요인 잠재

○ 노동계는 노조법 재개정 요구와 제도시행 준비를 병행

* 한국노총은 노조법 재개정 문제의 정치 쟁점화에 주력하면서(국회 앞 집회,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 16개 시·도 지역본부 교육 중

* 민주노총은 노조법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이슈화하며 6~7월 시기 집중 투쟁 추진(6.23~29 지도부 농성 → 6.29 서울집중 결의대회)

○ 경영계는 주요 사안별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현장 노무관리 강화

* (경총) 4월말부터 복수노조 대비 현장지원반 운영, 노조법 재개정 반대 입장 발표(6.24) / (경제5단체) '노조법 재개정 투쟁 중단 촉구' 성명 발표(5.1) / (대한상의) 노조법 재개정 중단 촉구성명(6.23)

<2> 대응 방향

□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현장 조기 안착에 집중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사업장 지도 및 점검 확대('10년 27개소 → '11년 134개소) 등 법 준수 철저 지도

* 금융권, 금속, 공공부문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적극적 홍보, 교육 등 복수노조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

* 라디오 광고, 리플렛(5만부), 지방관서·노동위 직원 및 현장 노사 교육 등

- 노사정 자문단(23개), 지방관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 등을 통해 현장 연착륙 지원

□ 현장 노사관계 안정 지원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주요 예상분규 요인(사내하도급, 복수노조 등)을 분석, 차별화된 예방 노력 강화

* 금속·건설 등의 특성을 고려, 임·단협 등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

- 적정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적 교섭이 확산되도록 지원

- 노사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기업·협력업체 등을 배려하는 분위기 확산 및 일터혁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붙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7.1~)

- '97.3.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 이후 14년간 유예해 온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 근로자는 사업장 단위에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함
- 노사정 자문단(23개), 지방관서 이행점검단 등 현장 연착륙 지원

2. 주40시간제 확대 적용(7.1~)

-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적용

< 주40시간제 도입시점 >



-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주40시간제 교육, 상담, 홍보 지원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주5일제 수업 관련 지원방안 마련(교과부 등 관계부처 합동)

3.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추진현황 및 계획(6.30)

- 일자리 현장 지원단(반) 활동결과, 애로사항 개선방안, 향후 운영방안 등

4.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6.30)

- '10년 하반기 평가 대상 국책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발표

5. 민간·공공 일자리 정보망 통합(7.1~)

- 7.1부터 민간취업포털(잡코리아·사람인·커리어)과 수도권 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에서 통합 제공

* 향후 그 외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일자리 정보도 추가 제공

6.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강화(연1회 → 연2회) (6.29, 11월)

7.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인상(7.1~)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근로자 수 1인당 고용부담금이 월795천원에서 최저임금액(월환산 903천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상향

8. 제1회 사회적기업의 날(7.1)

-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15:00~21:00, 기념식, 거리공연 등, 서울광장>, 사회적기업 페어<14:00, 토론회 등, 프레스센터>

* 언론사와 연계하여 「1사 1사회적기업 운동」 추진

9.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7.1, 안산)

- 외국인근로자의 생활고충, 법률상담 등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센터 신설·운영

10. 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7월)

- '10.7.6 1차 효율화 방안('10년 202개 → '11년 153개 사업) 이후, 유사·중복사업 추가 통폐합,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간 조정,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등

11.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7월)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지도

12. '내일배움카드제'를 비정규직, 이직예정 재직자, 무급휴직·휴업자까지 확대(7월말)

- 현재 실업자 대상의 자발적 훈련 지원사업인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 확대

1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 선정(7월말)

- 중소기업의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대기업형, 사업주단체형, 대학형 신규 운영기관 선정

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시행(9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근로자의 소득감소분 보전

15. 제8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개최(9.25~30, aT센터)

16.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 활성화 방안(10월)

17. 특수형태업무종사 산재보험 적용(9월)

- 퀵서비스기사, 택배업무종사자, 예술인, 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및 방안

*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관리기구(근로자공급사업자, 화주 등) 구성 준비

18.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편방안(12월)

-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12개 업종(운수업, 통신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축소방안 마련

19. '장애인 중장기 직업훈련 계획' 수립(12월)

20. '10~20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 발표(12월)

<별첨 2>

복수노조제도 주요 내용 및 정책방향

1. 주요내용

□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 '11.7.1.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 및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음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함
 - * 다만, 자율적단일화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가 가능
-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

□ 합리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마련

-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계적으로 진행
 - (자율적 단일화) 노조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
 - (과반수 노동조합)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임
 - (공동교섭대표단)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가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전체 조합원의 10% 미만 노조 제외)
 - *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 공정대표의무제도 도입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차별하여서는 안됨

*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정책방향

□ 전 망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수노조가 난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1년 이내 복수노조 설립가능 사업장 비율: 7~14%<한국노동연구원>, 11%<경총>, 17%<매일경제>

- 다만, 복수노조 시행이 시기적으로 임단협과 맞물려 있어 노사갈등 요인이 일부잠재

□ 정책방향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 등에 대한 지도강화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조속히 확정하는 등 임단협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지도

- 임단협 개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사전 컨설팅 강화

* 지역별 「노사정 자문단」(23개소)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노사 교육 실시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

- 법 무력화 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조치

<별첨 3>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제도변경 내용

구분	주44시간제	주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 주44시간	○ 주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 월차휴가: 월 만근시 1일 ○ 연차휴가: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 1년 미만 근속 자는 1월당 1일 휴가부여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 월1일 유급휴가	○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 ○ 최초 4시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단위: 1주 48시간 한도 ○ 1월단위: 1일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	- ○ 단위기간 3월로 확대, 1일 12시간, 1주 52시간 한도
임금보전	-	○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 의무 명시

<별첨 4>

국민에게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

○ 비전

-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미션

-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다
-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힘쓴다
-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뒷받침한다
- 실업, 산재 등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 어떠한 비위행위도 하지 않으며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핵심가치

- 열정과 긍지, 공정과 청렴

<별첨 5>

워크넷-공공-민간취업포털 일자리정보 통합 제공

- ◆ 7.1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일자리를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 7.1일부터 워크넷과 민간취업포털 대표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및 수도권 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 일자리정보 연계되어
 - 구직자들이 워크넷만 방문하면 기존 워크넷의 구인정보는 물론 국내 3대 취업포털과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발굴한 일자리 정보까지 한꺼번에 검색 가능
- 이를 통해 워크넷에서 볼수 있는 일평균 구인정보가 10만건, 24만명에서 20만건, 50만명이상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추진배경

- 지금까지는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편함 존재
- 따라서 구직자가 한군데의 사이트에서 모든 일자리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함 제공 필요

□ 그간 경과 및 향후 계획

- 민간취업포털 대표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및 수도권 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 일자리정보 연계 추진 ('10.12월~'11.6월)
 - 민간취업포털과 MOU 체결('11.3.16.) 및 TF구성 운영('11.3월~)
- 워크넷-민간-자치단체간 연계 범위·항목·방법 등 협의하여 일자리 정보 121개* 항목 표준안 마련
 - * 사업장정보, 구인조건, 근로조건, 전형사항 등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도 확대(~'11.12월)

□ 기대효과

구인정보 확대	구인건수 10만건 구인인원 24만명	구인건수 20만건 이상 구인인원 50만명 이상
직종의 다양화	제조업 생산직 중심	서비스업 전문직·경력직 등도 확대되어 다양화
일자리정보망 통합	일자리정보 사이트별 검색 ⇒ 불편	공공/민간부문 일자리정보를 One-Stop으로 검색 ⇒ 편리
서비스대상 확산	실업급여 수급자 등 고용센터 방문자 중심	기존 구직자 외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
이용자 증가	하루 평균 35만명	하루 평균 50만명 이상 기대

□ 일자리정보 통합 전후 비교

